

일용근로자 급여지급시 계좌

Q 당사는 일용근로자 고용후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급여 지급 요청한 계좌는 사업자우대계좌 (사업용계좌)인데,
이 경우 예금주가 근로자 이름과 일치하면 지급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일용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시 지급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제대로 제출하면 사업자우대계좌
이기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교통비 지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문의

Q 출장 교통비(부가세 포함)를 출장 요청 회사에서 지원할 경우, 청구 세금계산서 금액은 총
교통비 금액 +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귀사가 우선 지급한 출장비를 청구하는 경우 귀사가 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으로 하고 합계금
액에 10% 부가세 가산해 다시 청구하면 됩니다.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Q 개요사항)
1. 미국 본사의 자회사인 미국내의 Boise site의 회사 소속 영업직원이 한국 삼성 고객 관리를
위해 한국에 출장?파견됨.
2. 한국내 체류기간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6개월이상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내 체류도
언제까지인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3. 천안 과 Boise 사이트는 관계회사 거래로 천안이 삼성에서 order를 받고 Boise site에서 제
작하여 미국 삼성 오스틴에 납품함.
4. 영업사원은 영주권자이며 한국 국적 소유
5. 현재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 천안에 건강
보험 명목으로 대략 약 \$300을 지원해 달라고 함.

6. 영업사원 급여는 모두 Boise에서 지급함.

질의) 미국 Boise 소속 영업직원에게 한국내 체류기간동안 건강보험 가입 명목으로 월 \$300지급시 세무적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한국 법인과 미국법인의 세무 issue)

A 미국관계사의 직원이 자신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파견된 경우인데, 귀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파견직원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변경

Q 당사는 법인이고 현재 시설(기계장치)투자 진행 중 계획이 변경되어 타 계열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A라는 회사와 시설계약 후 계약금 세금계산서가 3월발행되어 지급완료 되었고, 중도금부터 타 계열사에서 변경계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질의1) 기존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는 '계약의 해지'사유로 계약변경(해지)일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문제소지가 있나요?(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의 해지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도 추가 질의 드립니다.)

질의2) 변경계약서 작성 후 취소된 계약금 반환은 타 계열사에서 당사로 직접 반환해줄 계획입니다.

변경계약서 상에 반환의무를 기재, 작성하면 기존 A라는 회사에서 당사로 반환하지 않고 타계열사에서 바로 당사로 입금했을때 문제소지가 있나요?

(계약거래한 A라는 회사는 개인사업자인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금을 당사로 직접 반환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A 1. 실질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의 지급여부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계약금이 지급되었다고 해도 실제 계약이 해지 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가급적 계약금을 원래 지급자인 귀사에게 반환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